

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

공공기관 및 이벤트 가이드

ADA(미국 장애인법) – 제3편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

미국 장애인법은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 단체(제3편 적용 대상 기관)가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. 해당 기관은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 기구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.¹ 제3편 적용 대상 기관에는 장례식장, 법률 사무소, 의료 기관, 금융 서비스, 운전 학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 대중을 위한 편의 제공 요건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음 리소스를 검토해 주십시오.

- ADA 개요: 효과적인 의사소통(법무부)
- 일반 정보 - 장애인 권리와 정보(법무부)
-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세제 혜택(적응형 환경 센터)
- 과도한 부담(ADA 국립 네트워크)
- 추가 지침 리소스가 필요하시면 ADA 전국 네트워크 핫라인으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.

ASL 통역사를 찾는 방법

개인 및 공공기관은 통역사나 통역사 소개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몇 가지 리소스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VDDHH 공인 통역사 명부, RID 공인 통역사 명부
- VDDHH 유자격 통역사 명단
- VDDHH 서비스 안내, “통역사 소개 기관” 섹션 참조

VDDHH는 버지니아주 법원, 기관 및 정부를 위한 통역 서비스만 조율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.

질문이 있으신가요?
isp@vddhh.virginia.gov로 문의해 주십시오.

클릭 가능한 하이퍼링크가 포함된 이 문서의
디지털 사본을 보시려면 QR 코드를 이용하거나
[https://www.vadsa.org/apps/DocumentRepository
Viewer/fileviewer/3438](https://www.vadsa.org/apps/DocumentRepositoryViewer/fileviewer/3438)를 방문하십시오.



¹ADA 요건: 효과적인 의사소통. <https://archive.ada.gov/effective-comm.htm>.

